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705호
- 나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년 8월 11일
- 라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
2. 제안이유

- 가.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 조성 등을 위해 ‘서울 홍릉 강소 연구개발특구’를 최근 지정 · 고시(2020.8.28.)하였음.
- 나. 이에,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2 회계연도부터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며,
- 다.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대상기관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나. 사무명 :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

다. 출연근거

-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, 제58조, 제58조의2
-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8조의2

제18조의2(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) 시장은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라. 출연의 필요성

- 홍릉 일대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인 혁신클러스터 수요 증가로 ‘기술-창업-성장’ 이 선순환하는 소규모·집약적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추진사업비 지원이 필요

마. 주요사업 내용

- 특구 내 기술핵심기관(연구소·대학)이 보유한 원천기술 등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 보유기술의 애로사항 해결
-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한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제품개발 지원, 임상시험 및 인허가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
바. 출연대상 기관개요

- 기관명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- 설립목적 :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
 - *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, 연구소기업·창업 성장지원, 특구 기반시설 구축 등
- 설립근거 :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
- 소재지 :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-5(도룡동 4-27)
- 법인설립 : 2005. 9. (유형: 준정부기관)
- 조직 : 11본부, 1부, 32팀 / 정원 173명

사. 소요예산(안) 및 산출근거

- 총 소요예산 : 5년간 4,000,000천원(연 평균 800,000천원)
- 산출근거 : 강소특구별 육성사업 국비의 20% 이상 매칭

(단위 : 천원)

구분	계	2022	2023	2024	2025	2026
출연금	4,000,000	800,000	800,000	800,000	800,000	800,000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의안은 ‘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’의 지정 · 고시(2020. 8.28)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(이하 “특구진흥재단”)에 출연하기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¹⁾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현황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이하 “과기부”)는 의약품 · 의료기기 등 바이오 산업이 집적해 있는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를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(이하 “홍릉특구”)를 지정함(2020. 8. 28)²⁾.
-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홍릉특구는 과기부(특구진흥재단)가 육성계획 수립과 예산을 담당하고, 기술핵심기관³⁾이 기술개발과 임상연구,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며, 서울시는 배후공간⁴⁾

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) 지역 내 산·학·연의 연구개발 촉진과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고, 창업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홍릉특구를 포함한 6곳(울주, 구미, 군산, 나주, 천안·아산)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지정함.

3) 기술핵심기관 : 공공연구기관 중 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」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교육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공공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기타기관 4개 유형임.

4) 배후공간 :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해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로

관리와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음.

<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 >

- 특화분야 : 디지털 헬스케어
- 기술핵심기관 :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, 경희대, 고려대
- 배후공간 : 서울바이오허브, BT-IT융합센터,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, 홍릉 바이오헬스센터, 홍릉 R&D 지원센터
- 위치 : 성북구, 동대문구 일원
- 면적 : 1.36km²(기술핵심기관 1.30km², 배후공간 0.06km²)
- 2021년 홍릉특구 육성사업비 : 72억원(국비 60, 시비(추경) 12)
- 사업구조



- 이 중 ‘특구진흥재단’은 2005년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된 이후 2018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, 연구성과의 사업화, 연구소·기업의 창업·성장 지원, 기반 시설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
<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주요 업무 >

01. 특구육성 사업	02. 제도지원	03. 특구개발 관리	04. 특구 인프라 지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기술발굴 및 기술이전·사업화▪ 연구소기업 등 기술 창업▪ 특구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▪ 특구펀드, 엔젤투자 등 기술금융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연구소기업, 첨단기술기업 대상 국세 및 지방세 감면▪ 특구 신규분양 입주시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폐적한 연구 및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규제 관리▪ 미개발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기술사업화 전문지원을 위한 테크비즈센터 등 SOC건설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대덕테크비즈센터, 광주이노비즈 센터 등

구분된 부지 및 시설 등을 말함.

- 조직은 11본부, 1부, 32팀(임원 1명, 직원 172명)으로 구성되며, 강소특구지원본부가 홍릉특구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.

<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조직현황 >



다.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적정성 검토

-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58조의25)에서는 특구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용에 대해 정부와

5) 제58조의2(출연 및 보조금)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 할 수 있다.

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- 현재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(이하 “강소특구사업”)은 특구진흥재단이 사업주체가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지원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음.
 - 강소특구 사업은 과기부와의 협약⁶⁾에 따라 국비 대비 20% 이상의 지방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어 강소특구 소재 12개 지역 중 서울시와 전북을 제외한 10개 특구가 2021년도 특구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, 서울시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2억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한 바 있음⁷⁾.
- 지난 시의회 정례회(제301회)에서 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출연·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가결됐으며, 2022년 출연금으로 국비(40 억원)의 20%인 8억원을 편성해 홍릉특구 육성사업을 지원할 예정임.
 - 홍릉특구 육성사업은 특구 내 기술핵심기관(연구소·대학)이 보유한 원천기술 등의 기술 역량을 활용해 기업별 기술개선, 제품개발, 임상시험과 인·허가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됨.
 - 특구진흥재단은 바이오·헬스케어 특화 분야의 15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, 기술사업화와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임.

6) 연구개발특구육성예산의 국비 총액대비 지방비 20% 이상을 사업 재원으로 분담해야함(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·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 제5조제1항).

7) 출연금 편성 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 이전에 사전절차로 의회에 출연동의안 제출이 의무화임.

- 이처럼 과기부와의 협약과 조례에 따라, 국비 대비 20%의 사업재원 분담을 위한 출연은 적법하고 타당함.
- 다만, 홍릉특구에 특화된 창업과 기업성장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특구진흥재단 간에 효율적인 협업과 관리 운영 방안이 요구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이시우	02-2180-8056

■ 참고자료

<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>

○ 사업지원내용

- 사업 예산 : 800백만원
- 사업비 지급 방식 : 선정 기업에 바우처 지원
- 사업 지원 기업 수(예상) : 15개 기업 (최대 100백만원 이내로 지원)
- 사업 세부 사항

사업명	세부 프로그램	세부내용
H-Bridge Program	기술개선 지원	<p>(기술개선 지원)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애로기술의 상용화 전환연구를 통한 시장진출 지원 및 기업이 보유하지 못한 기술분야에 대한 공공기술 도입을 통한 상용화 지원</p> <p>▷ Step 1. 입주 기업 애로기술 및 기술 핵심기관의 유망기술 매칭</p> <p>▷ Step 2. 입주 기업과 기술 핵심기관, 기술개선 지원 제안서 작성 및 홍릉강소특구에 제출</p> <p>▷ Step 3. 홍릉강소특구, 기술개선 지원 제안서 심사 및 선정, 연구비 지급</p> <p>▷ Step 4. 입주 기업, 기술 핵심기관에 필요 기술 요청</p> <p>▷ Step 5. 기술핵심시관, 입주기업 필요기술 상용화 전환 연구 및 홍릉 특구 임상 인프라 활용 임상시험 수행</p> <p>▷ Step 6. 기술핵심기관 연구 완료된 상용화 전환 연구, 기업에 기술이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기술개선 지원 안></p>
	시제품 지원	(시제품 지원) 특구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잠재고객 대상 시장검증, 제품 보완 계획 수립 지원

	<p>· 시제품 디자인, 기구설계, 목업 제작 중 기업이 희망하는 1개 분야를 택하여 지원함</p>												
<세부 지원프로그램>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</th><th>지원프로그램</th><th>지원내용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<td>시제품 제작(디자인)</td><td>신제품 및 제품 고급화를 위한 디자인 지원</td></tr> <tr> <td>2</td><td>시제품 제작(기구설계)</td><td>신제품 및 제품 고급화를 위한 기구설계 지원</td></tr> <tr> <td>3</td><td>시제품 제작(목업제작)</td><td>신제품 및 제품 고급화를 위한 시제품(목업) 제작 지원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지원프로그램	지원내용	1	시제품 제작(디자인)	신제품 및 제품 고급화를 위한 디자인 지원	2	시제품 제작(기구설계)	신제품 및 제품 고급화를 위한 기구설계 지원	3	시제품 제작(목업제작)	신제품 및 제품 고급화를 위한 시제품(목업) 제작 지원
	지원프로그램	지원내용											
1	시제품 제작(디자인)	신제품 및 제품 고급화를 위한 디자인 지원											
2	시제품 제작(기구설계)	신제품 및 제품 고급화를 위한 기구설계 지원											
3	시제품 제작(목업제작)	신제품 및 제품 고급화를 위한 시제품(목업) 제작 지원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인허가 지원) 특화기업 대상 인허가 활동 추진, 개발 제품의 인허가 대상 여부 판단 및 인허가 추진 계획 수립 및 사업화 Action Plan 수립 • 국내외 인증규격 및 시험 상담 자문 지원 • 표준/기술문서 작성 역량을 가지도록 업무 프로세스 구축 지원 •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 지원 • 안전성 확보를 위한 IEC 60601 Series 요구사항에 따른 안전성 및 필수 성능 관련 평가 지원 												
<세부 지원프로그램>													
인허가 지원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지원분야</th><th>지원내용(예시)</th><th>매칭방법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인허가 지원</td><td>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석 및 인증</td><td rowspan="3">전문기관 매칭</td></tr> <tr> <td>제품 판매를 위한 국내 인증·인허가 등</td></tr> <tr> <td>제품 판매를 위한 해외 인증·인허가 등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지원분야	지원내용(예시)	매칭방법	인허가 지원	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석 및 인증	전문기관 매칭	제품 판매를 위한 국내 인증·인허가 등	제품 판매를 위한 해외 인증·인허가 등				
지원분야	지원내용(예시)	매칭방법											
인허가 지원	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석 및 인증	전문기관 매칭											
	제품 판매를 위한 국내 인증·인허가 등												
	제품 판매를 위한 해외 인증·인허가 등												